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육아휴직기간은 최장 2주로 하며,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제6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규정함(「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0조제1항).

II. 검토의견

1.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제6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제6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제7항에서는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2주로 하며,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여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제19조(육아휴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최장 2주로 하며,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

-----.

(전문위원 이 은 정)